

대한관세법인

NEWS LETTER

2018.DEC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

다사다난했던 2018 년도 이제 10 일남짓 남겨두고 저물어가는 올해가 아쉽기도 하고 다가오는 새해가 설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은 접어두고 짧지만 남은 올 한해에는 행복한 일들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2019 년도에도 바라시는 일 꼭 성취하시는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대한관세법인에 많은 관심과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바일로 탄생한 'FTA-PASS'...사용자 편의 UP!

관세청은 기업의 원산지관리와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모바일-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서다.



FTA-PASS 는 FTA 원산지관리(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 년 만들어졌다.

관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인해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FTA-PASS 에 접속할 수 있어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원산지관리 업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FTA-PASS 에서는 컴퓨터 버전과 동일하게 원산지 간편판정, 품목분류 번호(HS CODE) 검색, 원산지결정기준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원산지 서류 조회 및 원산지확인서 송·수신이 가능해 사용자가 협력사에 방문해 업무협의를 하는 중에 바로 자사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자리에서 즉시 매출처를 변경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출장이 잦은 기존 사용자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우리나라와 FTA 를 체결한 주요 국가(중국·베트남·미국 등 18 개국)로 수출할 때의 FTA 활용에 따른 이익을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국 세율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A-PASS 에 대해 알아보자!

FTA-PASS(<https://www.ftapass.or.kr>)는 중견 및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FTA 체약상대국의 사후검증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FTA-PASS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협정별 원산지판정·관리 | 2 | 사용 용이 | 3 | 원산지판정 신뢰성 | 4 | 문서유통 및 증빙자료 보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효된 모든 FTA 협정 및 품목 판정지원 ▶ 공급물품 선택에 따른 일괄판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FTA협정 발효 또는 협정문이 개정될 경우 빠른 분석 작업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자도 원산지관리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흐름 설계 ▶ 기업ERP와 FTA-PASS 자료연계를 위한 범용 ERP 연계모듈 보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확인서 유통(송수신) - FTA-PASS ↔ 기업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 ▶ 사후검증을 대비한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기능 |

FTA-PASS 활용방법은 다음의 3 가지가 있으며 회사의 특성에 맞는 것을 골라 사용가능합니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율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차등 적용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68 개 물품을 49 개로 조정한다. 유압펌프 등 22 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 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체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기존 관세 감면율인 50%를 적용하지만, 중견업체가 수입할 땐 3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업계의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고자 공장자동화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 월 30 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관세법」 제 95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과 관련해 감면 대상 일몰기한을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 연장하고,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현행 관세감면 대상 68 개 품목을 49 개 품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엔 중소·중견기업 모두 50%의 관세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3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엔 기존과 마찬가지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물품별로는 현재 관세감면 대상인 68 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 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 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별표 2 의 4]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예정)】

| 연번 | 관세율표 번호 | | 품명 | 연번 | 관세율표 번호 | | 품명 |
|----|------------|-----------|---|----|------------|-----------|---|
| | 호 | 소호 | | | 호 | 소호 | |
| 1 | 8422 | 30 | 자동 캔(Can) 봉합기(封緘機) | 26 | 8451 | 80 | 자동 열처리기 |
| 2 | 8422 | 40 | 포장기 | 27 | 8456 | 11 | 레이저 절단기(Laser Cutting Machine) 또는 레이저 가공기(Laser Line Precision) |
| 3 | 8422 | 40 | 로터리 펌프(Rotary Pump) | 28 | 8456 | 90 | 전기화학식 디버링기(Electrochemical Deburring Machine) |
| 4 | 8424 | 30 | 습식분사기(Automatic Wet Blast System), 연마기(Polishing Machine) | 29 | 8457 | 1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 |
| 5 | 8439 | 20, 30 | 골판지 제조기(Corugator or Corugating Machine) | 30 | 8457 | 10 | 고속가공기(Micro Center) |
| 6 | 8439 | 30 | 골판지 웹(Web) 조절 장치 | 31 | 8458 | 11 | CNC 자동선반(Computerized Numerically Controlled Automatic Lathe, CNC SWISS type Automatic Lathe) |
| 7 | 8439 | 30 | 자동 원지 교체기(Auto Splicer) | 32 | 8458 | 91 | 터닝 머신(Turning Machine) |
| 8 | 8441 | 10, 80 | 절단기(Slitter) 또는 슬리터 스코어러 (Slitter Scorer) | 33 | 8459 | 70 | 볼 스크류 축 나선 가공기(Ball screw Shaft Whirling Machine) |
| 9 | 8441 | 30 | 플렉소 다이 커터(Flexo Die Cutter) | 34 | 8460 | 24, 29 | 연삭기(Grinding Machine) |

| | | | | | | | |
|----|------|------------------|---|----|--------------|----------|--|
| 10 | 8441 | 30 | 자동 전분 제호(製糊, Glue Preparation) 장치 | 35 | 8460 | 40 | 호닝기(Honing Machine)[브러쉬 호닝기(Brush Honing Machine)를 포함한다] |
| 11 | 8443 | 13 | 인쇄기 | 36 | 8460 | 90 | 디버링기(CNC Gear Deburring Machine) |
| 12 | 8445 | 30 | 연사기(Twisting Machine) | 37 | 8461 | 40 | 기어 셰이핑머신(CNC Gear Shaping Machine) |
| 13 | 8445 | 11, 12, 19 | 소면기(Carding Machine), 정소면기 (Comber) 또는 정소면 준비기 (Lap Former) | 38 | 8461 | 90 | 격취기(Gap Sizing Machine) |
| 14 | 8445 | 13 | 조방기(Roving Machine) | 39 | 8462 | 29 | 캔(Can) 제조용 복합기(Combination Machine For Square Can) |
| 15 | 8445 | 13 | 연조기(Drawing Machine) | 40 | 8462 | 99 | 파우더압축성형기(Powder Compacting Machine) |
| 16 | 8445 | 19 | 흔타면기(Scutching Machine) | 41 | 8479 | 89 | 성형기(Coiling Machine) |
| 17 | 8445 | 19 | 이물질 검출기 | 42 | 8479 8543 | 89 30 | 도금기 또는 코팅기(Coating Machine) |
| 18 | 8445 | 20 | 정방기(Spinning Machine) | 43 | 8479 | 89 | 아크이온코팅기(Arc Ion Plating System) |
| 19 | 8445 | 40 | 권사기(Winding Machine) | 44 | 8514 | 10 | 열처리장치 |

| | | | | | | | |
|----|--------------|----------|--|----|------|----|--|
| 20 | 8446 | 30 | 직기(Weaving Machine) | 45 | 8515 | 21 | 점용접기(Spot Welder) |
| 21 | 8448 | 11 | 자카드직기(Jacquard Machine) | 46 | 8515 | 80 | 용접기[레이저(Laser) 작동식 용접기 및 전자빔(Electron Beam) 용접기를 포함한다] |
| 22 | 8448 | 19 | 슬러브사 제조기(Slub Yam Device) | 47 | 9031 | 80 | 동력시험기(Dynamometer) |
| 23 | 8448 | 19 | 실 결점 제거 장치, 실 절단 감지 장치, 실 단절 결점 시험기, 정방 회전축 모니터링 장치 또는 코어실(Core Yam) 제조 장치 | 48 | 9031 | 80 | 틈새 선별기(Gap Sorter for B size Rings) |
| 24 | 8448 | 32 | 마운팅기(Mounting Machine) 또는 디마운팅기(Demounting Machine) | 49 | 9031 | 80 | 기어체커(Gear Checker) |
| 25 | 8448 8460 | 32 40 | 연마기 또는 랩핑기(Lapping Machine) | - | - | - | - |

※규격 : 게재 생략

"관세법 제 95 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에 대해 알아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 1 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 88 조 내지 제 105 조에는 관세 감면과 관련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제 95 조에 앞서 언급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감면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이 가능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의 4 에 총 68 개의 물품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49 개로 조정하고, 감면율 또한 기존의 50%를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유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감면율을 30%로 낮추어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터키 AEO MRA,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

우리나라와 터키가 내년 3월 1일부터 한·터키 AEO MRA 를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터키에서 신속 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11월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 6 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내년 3월 1일부터 AEO MRA 을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 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국 수출기업이 신속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터키 AEO MRA 를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서명된 한·터키 AEO MRA 는 올해 시범사업을 마쳤고, 이번 청장회의를 계기로 전면 이행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육로운송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 및 국경감시 체계 노하우를 양 관세당국이 공유하기로 했다. 터키는 불가리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연간 약 102 억원(검사비용 : 49 억원, 해외 공인비용 : 53 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 교역량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액은 62 억 달러, 건수로는 6 만 5,361 건 수준이다.



전자상거래 물품 반송 시 B/L 합병 가능

전자상거래 물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문 취소, 통관 요건 미충족 등으로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특송화물도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물품반송에 관한 업무처리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는 국내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 중 동일한 해외 판매자의 특송물품에 대한 B/L 합병 허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물품 B/L 합병 등 업무처리 지침'을 12월 11일 발표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물품의 건별 반송 절차는 많은 시간과 물류비용이 소요돼 국내 구매자, 특송업체, 창고 운영인 등 관련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치기간이 경과하거나 상품성을 상실한 특송화물의 폐기 등 처리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12월 1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중 주문 취소, 통관 불허 등으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하려는 물품의 경우 최초 B/L 상의 수하인(Consignee)과 관계없이 해외 판매자(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수하인으로 해 B/L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요건을 보면, 해외 수출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국내 구매자에게 환불해야 하고, 물품 취급권한의 경우 B/L 합병 신청자는 해외 수출자 또는 해외 수출자로부터 물품 취급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한정했다.

또한 국내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 중 동일한 해외 판매자의 특송물품에 대해서만 B/L 합병을 허용하며, B/L 합병 신청자는 물품 취급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외 수출자 위임장 등), 환불조치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B/L 합병 신청 건 심사 시 신청요건 구비 여부 등 심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지침 시행과 관련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세관에서는 이번 지침 시행과 관련해 특송업체, 포워드, 창고 운영인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내문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자동차 분해 작업(KD)'도 '보세공장 작업 범위'에 포함

앞으로 보세공장 특허대상의 작업 범위에 자동차 분해 작업(KD, Knock Down)도 포함된다. 보세공장에서 고철, 폐목재(廢木材)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신속하게 반출한 후 일괄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세공장 특허대상의 작업 범위에 자동차 분해 작업도 포함했다. 해외 완성자동차를 보세공장에 반입해 분해한 후 수출하는 공장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법」 제 253 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잉여물품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보세공장에서 고철, 폐목재 등 대량으로 발생하는 잉여물품을 신속하게 반출한 후 일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조선산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세구역 운영인은 '① 즉시반출업체 및 품목 등록 → ② 잉여물품 확인서 발급 → ③ 즉시반출신고서 제출 후 반출 → ④ 10일 이내 일괄 수입신고 → ⑤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 목록 조회 후 통관이행내역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일보세공장 특허범위도 확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근접거리(15 km 이내)의 동일 기업체 보세공장을 단일특허로 허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등 수입국 수입승인·허가 등 규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제조·가공 중 보세구역 내에서 사용·소비되는 필수 품질 테스트 시료 등도 정상적인 소요량으로 인정한다.

이 외에도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반입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신고 절차를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 기록으로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법 "관세 환급받았다면, 가산세도 면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돌려받았다면 가산세도 낼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독일에서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업체가 무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 세관은 관세 20억 원, 부가가치세 29억 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금을 낸 뒤 FTA가 아닌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세금면제를 신청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지만, 가산세는 환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본세를 감면해 환급해줌으로써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자가 치료용 '대마 의약품'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 개월 후에 시행된다.

시행 즉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은 상태여서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여전히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 회 투약량, 1 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관세청은 12월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대마 제품 마약류는 여행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제품명, 성분에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l) 표기 유의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1.1), 캐나다 전역(10.17)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공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전년 동기 13.9kg 대비 514% 증가했다.

특히 대마류는 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 초콜릿, 카라멜, 카트리지, 술(양주병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것) 등 대마 제품 마약류가 주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가 항공편(LCC)을 이용한 보따리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농산물, 담배 등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간 운임이 저렴한 항만 화객선(화물 및 여객 운송 선박)을 통해 소위 보따리상이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선박보다 비용,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의 고추, 녹두, 서리태 등 농산물의 초과반입과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은닉, 위장 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보따리상 검사로 인해 일반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이나 자진신고 여행객의 신고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장내 소란 행위 등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초과 반입할 경우 전량 유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여행자들에게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하여 줄 것과,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 반입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